

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연명의료결정제도

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2018. 2. 4.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시행)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?

1 등록기관 방문

작성을 희망하는 경우
본인이 직접
방문하여 작성

2 본인 확인

신분증(주민등록증,
면허증, 여권 등)
지참 후 기관 내에서
본인 확인

4 등록 및 효력 발생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
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

3 상담 및 작성

1:1 상담을 통해
6가지 관련 사항
숙지 후,
안내에 따라 작성



보건복지부

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대표전화 1855-0075)